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유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92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제5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를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5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	라.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
<u>부, 학생 및 직장인</u> 이 여유시	
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	
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